

제 419 호

1973.12.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장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806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수수로진수조례중개정조례..... 3
제 807 호	서울특별시립 묘지설치 조례..... 3
○ 규 칙	
제 133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직제중개정규칙..... 5
○ 고 시	
제 184 호	건축법상 권한위임..... 6
제 187 호	상품권발행자의 준수사항..... 7
제 188 호	서울특별시 사료성분등록고시..... 17
제 189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인가..... 18
○ 공 고	
제 227 호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 24
제 228 호	환지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24
○ 사 력 2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12.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하 결 생

◎ 서울특별시조례제 806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제정 1964. 10. 27. 조례제 355호
개정 1973. 12. 5. 조례제 806호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수수료로서 1인당 500원을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도 중,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순위고사 시행시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립묘지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 서울특별시조례제 807 호

서울특별시립묘지설치조례

제 1조 (목적) 예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제 또는 유골의 예장을 위한 문묘지를 장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묘지(이하 "묘지"라한다)를 둔다.

제 2조 (명칭과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 3조 (관리사무소) 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묘지관리사무소과 그 지소를 두되 그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 4조 (공무원) ① 묘지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4급감류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윤만아 소관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소장 이외에 관리사무소 및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조 (묘지의사용 및 사용료) 묘지의 사용과 사용료에 관하여는 따로

<p>조례로 정한다.</p> <p>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p>	<p>로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묘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p>
--	---

“별표”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립 공원묘지	경기도파주군광안면용머리산 65-1
서울특별시립 용머리묘지	경기도파주군광안면용머리산 91-1, 산 92-2, 산 93-5, 6, 산 94, 산 95-1, 산 96, 산 97-1, 산 98, 산 107, 산 102-2, 산 105, 조리면장곡리산 61-1,
서울특별시립 벽제리묘지	경기도고양군벽제면벽제리산 4-1, 산 5, 산 5-1
서울특별시립 내곡리묘지	경기도양주군진접면내곡리 558-3, 산 99-1.
서울특별시립 상우리묘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상우동산 57-1, 산 51-2, 산 56, 산 57-3, 4, 산 58, 연북동산 1-1, 산 1-3, 양주군구리면교문리산 34, 산 37, 산 145, 산 60, 산 84-1, 2, 산 39-32, 33,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59, 60, 61, 62, 63, 64.

규 칙

서울특별시직운동장지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3. 12. 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332호

서울특별시직운동장지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직운동장지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담당관) 장관을 보좌하게하기 위하여 운영담당관과 기술담당관을 두고 운영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술담당관은 지방전기과 또는 지방전속기과로 보한다.

제4조(운영담당관) ①운영담당관 밑에 운영제와네리제를 두고 운영제장과 경리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운영담당관의 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계

가. 문서, 파일

나. 인사

다. 발송관리

라. 각 경기장의 사용허가

마.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바. 부속시설(식당,배설동)의 운영사, 입장권의 검인

아. 기타 다른 담당관 및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계

가. 세입금의 수납

나. 세입, 세출의 현금출납

다. 매도

라. 각종 사용료의 수납

제5조(기술담당관) ①기술담당관 밑에 시설계와 기전계를 두고, 시설계장은 지방전속기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기전계장은 지방전기기사 또는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②기술담당관의 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계

가.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나. 건축물과 부속설비의 유지관리

다. 담당관내 다른 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 권 지

가. 전기, 통신설비의 설계, 시공 보수 및 유지관리
나. 난방시설물의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직무대행) 강장이 사퇴가 있을 때에는 운영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전장과 운영담당관이 5.부사교가 있을 때에는 기술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 조 (공무원) 운동장이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심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84 호

건축법상권한위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계기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다만,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5층이상인 건축물과 미관지구내 및 특정지구 정비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중 제 2 조 제 15 호 나목,

제 5 조, 제 6 조 제 3 항, 제 7 조,

제 7 조의 3 제 2 항, 제 8 조, 제 7

조의 2 제 2 항, 제 42 조 제 1 항

제 1 호, 제 4 호 및 동조 제 4 항

제 43 조와 제 47 조 제 2 항의 규

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197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사고시 제 187 호
 상품권발행자의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사고시 제 98 호 1973.6.20)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73. 12. 5.
 서울특별시
 상품권발행자의 준수사항 중
 개정고시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 (기본규칙) ①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본본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립의 기본등록시 등록자는 관한 세무사항이 발행하는 영입감찰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등록은 별지 제 1호 서식의 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된 기본본에 별지 제 2호 서식의 「등록필수인」을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 1항의 등록은 년 2회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기한은 매년 추석 전 10일과 12월 15일로 한다.
 제 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조의 2 (공탁물의 반환승인)
 ① 상품권의 발행자가 서울특별시

으로부터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공탁물의 반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립의 승인신청은 제월 말일 현재의 상품권 발행 및 상환실적을 기준으로 월 1회 신청하며 최저 공탁액은 상환이월의 금액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가 공탁물의 반환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면 별지 제 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공탁물은 이를 반환승인할 수 없다.
 제 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조의 2 (상환의무) 상품권의 발행자는 소비자가 권면가액 이하의 물품을 선호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대로 상환에 응하여야 하며, 상환시의 발생차액이 권면가액의 30%이내일 때는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 8조 및 제 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 조 (외수상품권의 권리) ① 상품권의 발행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외수한 상품권에는 그 상당한 액의 외수일자를 명확히 기재한후 이를 외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신실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이 경과한후 외수상품권을 파기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청의 승인할 얻어야 하며, 그 신청과 승인은 각각 별지 제 8 호 및 제 9 호 서식에 의한다.

제 9 조 (사무의 위임) 상품권에 관한 규제업무를 보다 능률화하며, 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 2 조 내지 제 4 조의 2 제 7 조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청의 권한은 이를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내부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시장사무취급 규칙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백화점내 전코를 상환할 영업소로 정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2. 상품권의 발행장소와 상환할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구(출장소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상환할 영업소가 2개구 이상에 소재하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지) 서식 제 1 호 상품권 등록대장
 반출 * 등록일 *란 다음에 *영업감찰번호*란을 삽입한다.

(별지) 서식 제 3 호 공탁신고 양식중 *발행자누적액*란 앞에 *전본등록번호*란을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 4 호 공탁면제 신청양식중 *발행누적액*란 앞에 *전본등록번호*란을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 5 호 상품권 발행보고양식중 *상품권종별*란 앞에 *전본등록번호*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 품 권 등 록 대 장

연 호	등록일	영업자명	발 행 자		상환할 영업소	등록 공류	권 재			비고
		번호	주 소	성명			담당	계장	과장	

회 사

분류기호 전 화 () 197

수 신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출장소장)

제 목 공탁신고

상동건법제 4조 제 1항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187호 제 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공 탁 액

건물등록번호	발생누계액	미정누계액	법정최저공탁액	실제공탁액	초과공탁액	비 고

※ 공탁물이 현금일 경우에는 미고납액 그 금액을 기재한다.

2. 공탁물의 내역 (유가증권일때에 한함)

공탁번호	공 탁 일	액 면 금 액	단위당시세액	시세환산액	비 고

첨 부 : 1. 공탁서 사본
2. 공탁서

회 사

대 표

회 사

분류기호 전화 () 197 . . .

수 선 서울특별시시장 (구청장, 출장소장)

제 목 공탁법제실정

197 . . 현재 상품권 미상환액에 대한 공탁을 면제하
고저 서울특별시고시제 187 호 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서류
첨부 공탁법제 실정합니다.

건본등록번호	발행누계액	상환누계액	미상환누계액	비 고

- 첨 부 : 1.
 2.
 3.

회 사

내 표



29-12 제 419 호 시 보: 1973.12.27

회 사

분류기호 : 전 화 () 197

수 신 : 서울특별시 (구청장, 출장소장)

에 목 : 상품권발행보고

상품권법제 10조 제 1항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187호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 현재 상품권 발행상황을 보고합니다.

전 본 등록번호	상품권 종 별	발 행 액			상 환 액			미상환누계액	비 고
		전월말	금 일	누 계	전월말	금 일	누 계		

회 사

대 표

㉠

회 사

분류기호 () 전 화 () 197 . . .

수 신 서울특별시청 (구청장, 출장소장)

제 목 공탁물 반환승인신청

1. 상품권법제 5조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187호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탁물 반환승인 신청합니다.

가. 실 청 내 역

전 분 등록번호	공탁일	공탁번호	당초미상환액	공탁액	공 탁 후 상 환 액	미상환액	금회반환신청

나. 공탁물의내역 (유가증권일부의 한함)

종 류	기 호	번 호	매 수	권 면 액	공 탁 가 격	비 교

회 사

성 명

㉞

서울특별시

분류기호

197

수신

제목 공탁물 반환승인

1. 상륙권법 제 53E 규정에 의거 귀하가 제출하신 공탁물 반환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승인 내역

- 1) 공탁번호
- 2) 공탁년월일
- 3) 공탁액
- 4) 금회반환승인액
- 5) 공탁물의 내역 (유가증권의 경우)

종류	기호	번호	비수	권면적	비고

서울특별시장

회 사

분류기호 진화 () 197 . . .

수 신 서울특별시청

제 목 최수상품권 파기승인신청

1. 서울특별시 고서제 187 호에 의거 최수상품권에 대하여 파기
요자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최수일자	최수매수	파기매수	파기할상품권	의종가액	비 고

검본등록번호

회 사

대 포 이 사

㉞

29-16 제 419 호

시 보

1973. 12. 27

서울특별시

분류기호 전파 () 197 . .

수신

제목 퇴수상품권 파기승인

1. 귀하가 신청하신 퇴수상품권에 대한 파기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퇴수일자	퇴수대수	파기대수	파기할상품권총가액	비고
계				

서울특별시청

◎ 서울특별시사료성분등록고시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성분등록을
 제 188 호 고시한다.
 1973. 12. 5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공 간 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종 류	별 장	용 도
4-174	용성사료공업주식회사	상수동2가323	정태원	비합사료	고건기백 것기백	소합료
4-175	공용사 것기백	소합료
4-176	일동사 합사료	합사료
4-177	나농사 합사료	합사료
사 료 성 분 량				유효기간	비 고	참 조 문 헌
최 소 량	최 대 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15.0	2.0	13.0	12.0	73.12.5 75.12.4		
13.0	2.0	11.5	11.0	.		
16.0	2.0	4.5	13.0	.	3-11-WO.01 옥수수 40 수수 20 농외축 40 대두박 7	기타박류 19.50 계분 1 인산칼슘 1 미티오신 1 세라미신 0.2
16.0	2.0	4.5	13.0	.	옥수수 40 수수 20 농외축 30 대두박 7	기타박류 18 계분 2 인산칼슘 1 미티오신 1 세라미신 0.2

<p>㉔ 서울특별시고시제 189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1. 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1조와 동법 제 26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상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73. 12. . . .</p> <p>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지의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순화동, 의주로 1, 2가충정로1가충정로 확장공사</p> <p>2. 사업의종류및 명칭: 영천교-서대문간도로 확장공사</p> <p>3. 사업의규모: 폭 40 m 연장 830 m 지하차도폭 15 m 연장 250 m</p> <p>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의 착수및 준공예정일: 73.11. . . -74. 12. . .</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건설의 표시(별첨)</p> <p>7.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p>
--	---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차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1	순화동	207-1	대	27.7	207-1	대	27.7	순화동 207-1	정영국	
2	"	207-5	"	2.5	207-5	"	2.5	"	"	
3	"	126-1	"	56.4	126-1	"	56.4	충정로 2가 5-4	김상국	
4	"	126-2	"	0.1	126-2	"	0.1	"	"	
5	"	126-6	"	0.2	126-6	"	0.2	"	"	
6	"	127-1	"		127-1	"		순 화 동 127	김중철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지적	지번	지목/지적	주 소	성 명	
7	순화동	127	대	127	대	순 화 동 127	김 중 혁	
8	"	126-3	" 7.3	126-3	" 7.3	충경로 2가 5-4	김 상 열	
9	"	106-1	" 27.7	106-1	" 27.7	순화동 106	이 구 의	
10	"	120-2	" 82	120-2	" 82	순화동 120-2	지 도 단	
11	"	120-5	" 21	120-5	" 21	순화동 120-3	박상녀외2	
12	"	120-1	" 7.6	120-1	" 7.6	"	"	
13	"	116-3	" 1.1	116-3	" 1.1	춘천시중앙동2가4	한 성 일	
14	"	116-4	" 6.6	116-4	" 6.6	"	"	
15	"	118-4	" 322.9	118-4	" 322.9	"	조선측산00	
16	"	117-2	" 0.2	117-2	" 0.2	순화동 126	고 민 호	
17	"	118-9	" 113.9	118-9	" 113.9	장충동 2가 186-26	박 제 회	
18	"	118-8	" 17.3	118-8	" 17.3	산선동 2가 200	장 경 순	
19	의주로2가	20-2	" 51	20-2	" 51	신철동 205-18	김 정 욱	
20	"	20-2	" 6.6	20-2	" 6.6	"	윤근남	
21	"	19-1	" 18.8	19-1	" 18.8	합 동 32	박 용 회	
22	"	24	" 56	24	" 56	장충동 2가 186-26	박 제 회	
23	"	26	" 13	26	" 13	"	"	
24	"	25-1	" 20	25-1	" 20	합 동 32	박 용 회	
25	"	18-1	" 4.6	18-1	" 4.6	"	"	
26	"	27-1	" 15	27-1	" 15	장충동2가 186-26	박 제 회	
27	"	27-7	" 31	27-7	" 31	"	조선측산00	
28	의주로1가	111-1	" 41	111-1	" 41	서소문 120-8	박 은 산	
29	"	110-1	" 13.7	110-1	" 13.7	의주로 1가 110	장 대 욱	

순 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주용면적)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30	외주로1가	109-1	대	48	109-1	대	48	외주로1가 109	신정배	
31	"	108-4	"	7.4	108-4	"	17.4	"	허강열	
32	"	108-7	"	8.1	108-7	"	8.1	외주로1가 108-1	홍성숙	
33	"	107-3	"	21.4	107-3	"	21.4	" 107-1	김춘성	
34	"	106-2	"	7.4	106-2	"	17.4	" 106-2	최남순	
35	"	43-1	"	20.3	43-1	"	20.3	" 43	유우일	
36	"	39-4	"	3	39-4	"	3	"	국유지	
37	"	39-3	"	27.8	39-3	"	27.8	외주로1가 43	유우일	
38	"	38	"	22	38	"	22	불광동 산 39	오귀배	
39	"	37-1	"	120.6	37-1	"	120.6	"	"	
40	"	91-1	"	29.7	91-1	"	29.7	"	국유지	
41	"	80-2	"	4.9	80-2	"	45.9	"	"	
42	"	67-3	"	6	67-3	"	16	"	吉野新三郎	
43	"	66-1	"	23	66-1	"	23	재 단 법 인 원 사 학원		
44	"	64-3	"	0.3	64-3	"	0.3	"	吉野新三郎	
45	"	64-1	"	52	64-1	"	52	외주로1가 64	"	
46	"	64-2	"	18.8	64-2	"	18.8	"	정현구	
47	"	63-1	"	29	63-1	"	29	"	"	
48	"	50-1	"	26.7	50-1	"	26.7	합자회사 난가주조장		
49	"	51-1	"	2	51-1	"	2	외주로1가 52-1	장용택	
50	"	49-2	"	13.4	49-2	"	13.4	복아현동 147-19	김용규	
51	"	48-2	"	13.8	48-2	"	13.8	인의동 48	김교성	
52	"	13-2	"	89	13-2	"	89	외주로1가 48	신규성	
								새화동 163-3	강순재	

순 위	소 제 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58	순 화 농	1-123	대	30	1-123	대	30	순화농 1-7	여성수	
54	"	1-124	"	9.6	1-124	"	9.6	계소문 120-19 선당농 373-7	송정득 박진환	
55	"	1-129	"	73.5	1-129	"	73.5	달효로 2가 58-11	김서철	
56	외수로 1가	55-41	"	8	55-41	"	8		국유지	
57	"	47-1	"	11	47-1	"	11		"	
58	"	14	"	31	14	"	31		과창명길	
59	"	12	"	22	12	"	22		아남부동	
60	"	10-1	"	107.3	10-1	"	107.3		안국전역	
61	"	24-4	"	35.2	24-4	"	35.2	충정로 1가 75	농업	
62	"	7-1	"	27.2	7-1	"	27.2		"	
63	"	9	"	51	9	"	51		"	
64	"	8	"	29	8	"	29		"	
65	"	15-3	"	23.2	15-3	"	23.2		박산구	
66	"	7-2	"	25.5	7-2	"	25.5	외수로 1가 19-3	임영도	
67	"	6-2	"	10	6-2	"	10		"	
68	"	15-1	"	12.3	15-1	"	12.3	외수로 1가 15	박산구	
69	"	16-2	"	9.6	16-2	"	9.6		"	
70	"	16-1	"	10	16-1	"	10		"	
71	"	6-1	"	6	6-1	"	6		국유지	
72	"	4-9	"	3.9	4-9	"	3.9	외수로 1가 4	수도계원 주식회사	

순 위	소 계 지	통합전표시			통합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관 제 인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73	외주로1가	4-8	대	4	4-8	대	4	외주로1가4	수도개발 주식회사	
74	"	1-3	"	17.9	1-3	"	217.9	수하동17	오윤근	
75	"	1-2	"	23	1-2	"	23		국유지	
76	충정로2가	139	도로	16.6	139	도로	16.6	충정로2가141-3	민병후	
77	"	141-12	대	27.7	141-12	대	27.7	"	"	
78	"	138-3	"	0.9	138-3	"	0.9		국유지	
79	"	138	도로	22.7	138	도로	22.7	충정로2가22-7	민병학	
80	"	138-5	대	33	138-5	대	33	"	"	
81	"	138-6	도로	8.5	138-6	도로	8.5	"	"	
82	충정로1가	98-1	대	68	98-1	대	68	충정로1가98-1	이길용 김영옥	
83	"	100-1	"	15.9	100-1	"	15.9	" 100-1	서현숙	
84	"	100-3	"	0.1	100-3	"	0.1	교북동35-2	김창범	
85	"	101-6	"	0.4	101-6	"	0.4		소산전 반차량	
86	"	97-4	"	0.6	97-4	"	0.6	행촌동144-11	심명수	
87	"	97-6	"	4.6	97-6	"	4.6	"	"	
88	"	97-5	"	5.4	97-5	"	5.4	교북동35-2	김창범	
89	"	97-1	"	2	97-1	"	2	행촌동209-56	윤도객	
90	"	101-5	"	4.4	101-5	"	4.4	교북동35-2	김창범	
91	"	101-4	"	8	101-4	"	8	행촌동209-56	윤도객	
92	"	101-1	"	47	101-1	"	47	충정로1가100-1	서현순	
93	"	101-3	"	2	101-3	"	2	신문로1가194	이종렬	
94	"	102-4	"	0.8	102-4	"	0.8	충정로1가100-1	서현순	

순 위	소 재 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95	충정로1가	102-5	대	18.6	102-5	대	18.6	충정로1가102-5	정원숙	
96	"	103-1	"	19	103-1	"	19	" 103	조봉호	
97	"	102-1	"	34.4	102-1	"	34.4	신문로1가194	이승영	
98	"	86-4	"	34.2	86-4	"	34.2	동덕동38-135 만리동2가176	조양연 이	
99	"	93-3	"	8	93-3	"	8	충정로1가12-32	이근성	
00	"	92-1	"	11.2	92-1	"	11.2	" 92	송재덕	
01	"	88-6	"	2.2	88-6	"	2.2	외주로1가158	조동환	

건
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구 조	승 면 적	수 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순화동116	육조외집	9	9	춘천시중앙로2가4	한성일	
2	" 117	"	5	5	순화동117	김자만	
3	" 117	육조도단	5	5	"	"	
4	" 103-1,2	육조외집	31.46	31.46	" 139	양철묵	
5	" 120-1	"	11 20 2) 7	20 7	" 120-1	송을진	
6	"	"	14	14	"	박상녀	
7	"	"	8.5	8.5	"	이교선	
8	" 120-2	"	24	24	"	지도만	
9	" 207	육조도단	33	33	" 207	김홍복	
10	충정로2가141-3,5,8,9	"	45	45	충정로2가141-3	민병두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27 호

환지예정지정정올위한공고

1. 도봉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제 56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지소유자 및

-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2. 환지예정지 계획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굴회정리 1과에 비치하고 있음.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따로 통지할 것이나, 수병하지 못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공고로 가 롬함.

1973. 12. 5.

서울특별시장

환지예정지정정올위한공고

종 전 의 토 지	가 산	표준	환 지 예 정 지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도봉 361	담	(498 중) 237	-	-	구회정리사업법제 52 조의거	전역	합천으
" 364	"	(845 중) 646	-	-	도	정산함.	
" 363	"	(899 중) 440	-	-			
" 360	전	198	-	-			
" 365	대	66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228 호

환지계획변경올위한공고

1.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 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의 동법제 55 조 및 동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 공고한다.

2. 환지계획변경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구회정리 1과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12. 6.

서울특별시장

사 명

○ 1973.12.1.

동대문구 지방행정사 양제용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기 김일수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기 조영내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 이종식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사 김동찬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 박상우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사 우관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4 호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 1973.12.3

내무국장 이사관 김찬희

감사관 겸무를 영함.

중구 지적기원 안승진

73.11.7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72.10.20 일 (말정

제 717 호) 징거파면처분을 동

일자로 취소함.

중로구 근무를 영함.

관방은수국장 이사관 주용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 부이사관 손경환

교수부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보함.

감사관 부이사관 한종섭

서울특별시 관방은수국장에 보함.

재무국장 부이사관 이상복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에 보함.

29-26 제 419 호

시

보

1973.12.7.

<p>동대문구청장 부이사관 안 진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 제 2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함.</p>	<p>가 속 위 생 지 방 수 의 사 이 강 훈 시 령 소 명 함. 농 정 과 근 무 를 명 함. 가 속 위 생 지 수 의 원 보 오 석 문 시 령 소 명 함. 농 정 과 근 무 를 명 함.</p>
<p>1973 년 12 월 3 일 대 통 령</p>	<p>농 정 과 지 방 수 의 사 권 순 호 가 속 위 생 시 령 소 근 무 를 명 함.</p>
<p>◎ 1973.12.4.</p>	<p>농 정 과 지 수 의 사 보 나 정 태</p>
<p>용산구청무과 지방행정관 김 회 수 동대문구 총무과장에 보함.</p>	<p>가 속 위 생 시 령 소 근 무 를 명 함. 농 정 과 지 방 수 의 원 감 기 군</p>
<p>동대문구 지방행정관 이 창 희 용산구 총무과장에 보함.</p>	<p>가 속 위 생 시 령 소 근 무 를 명 함. 구 의 지 방 과 공 원 장 원 수</p>
<p>한 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유 재 길 근영출장소 과장근무를 해제함.</p>	<p>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 1973.12.6</p>
<p>◎ 1973.12.5</p>	<p>추 영 호</p>
<p>환 경 과 지 방 토 목 기 사 보 정 동 진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3 호의 규정 에 의 해 휴 직 을 명 함.</p>	<p>지 방 토 목 기 원 보 시 보 에 임 함. 1 호 봉 을 급 함.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종로구보건소 지방간호사 김 창 숙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p>	<p>지 방 기 계 기 원 보 시 보 에 임 함.</p>
<p>가 속 위 생 지 방 수 의 사 이 하 준 시 령 소 명 함. 농 정 과 근 무 를 명 함.</p>	<p>1 호 봉 을 급 함. 상 정 과 근 무 를 명 함.</p>

<p>지방지척지원보시보에 임함.</p>	최 태 영	<p>1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마포구 근무를 명함.</p>		<p>김 순 실</p>
<p>지방지척지원보시보에 임함.</p>	김 상 기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지방지척지원보시보에 임함.</p>		<p>정신병원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p>		<p>정 순 덕</p>
<p>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지방지척지원보시보에 임함.</p>	함 병 남	<p>1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정신병원 근무를 명함.</p>
<p>용산구 근무를 명함.</p>		<p>신 순 우</p>
<p>지방지척지원보시보에 임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황 윤 보	<p>1호봉을 급함.</p>
<p>지방지척지원보시보에 임함.</p>		<p>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p>		<p>김 효 권</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지방약무지원보시보에 임함.</p>	김 용 애	<p>1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승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영동포병원 근무를 명함.</p>		<p>기획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무관 정 현 국</p>
<p>지방약무지원보시보에 임함.</p>		<p>동대문구 세무 2 과장에 보함.</p>
<p>1호봉을 급함.</p>	정 공 덕	<p>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무관 김 문 종</p>
<p>지방약무지원보시보에 임함.</p>		<p>기획담당관실 기획조정계장에 보함.</p>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실 본부(대전중)) 시정개발담당관직. 파견근무함.	김 응 주	도봉구 근무를 명함.
경북성주군 행정주사	박 만 수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급수와 근무를 명함.
9호봉을 급함.		윤 영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의사보시보에 입함.
주택건설과 지방기계사	배 형 호	1호봉을 급함.
안강건설사업소 파견 (73.12.1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74.3.31 까지) 근무를 명함.		전북전주시 지방행정서기보
주택건설과 지방건축기사	오 동 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안강건설사업소 파견 (73.12.1		지방행정서기보에 입함.
74.3.31 까지) 근무를 명함.		3호봉을 급함.
주택건설과 기술부원	김 준 근	성동구 근무를 명함.
안강건설사업소 파견 (73.12.1		경북대구시 지방행정서기
74.3.31 까지) 근무를 명함.		이 양 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입함.
지방지적기원보에 입함.		4호봉을 급함.
2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충북제천군 지방지적부	이 영 제	전북보성군 지방행정서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대 완 선
지방지적기원보에 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2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서기에 입함.

제 419 호

시

보

1973.12.7. 29-9

<p>2 호봉을 갑함.</p> <p>종로구 근무를 명함.</p> <p>농수산물직방행정주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p> <p>3 호봉을 갑함.</p> <p>동정과 근무를 명함.</p> <p>경기도내무직방행정주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p> <p>3 호봉을 갑함.</p> <p>승구 근무를 명함.</p>	<p>김운호</p> <p>신상욱</p>	<p>충남천안시 지방행정서기보 시 등역</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서기보에 입함.</p> <p>4 호봉을 갑함.</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1973.12.15</p> <p>충청남도청 권도원 이 승구 수원공무사보 4 등급</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p> <p>지방청 도원 6 등급에 입함.</p> <p>2 호봉을 갑함.</p> <p>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